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가단512062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11. 8.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5,144,740원과 그중 74,940,470원에 대하여 2022. 4. 7.부터 2022. 5. 13.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0. 8.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8. 18. 접수 제336호로 마친
소유권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조규설

별지